

음주처벌 '살짝' 피한 운전자 월 1000명...이제는 처벌

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제정

음주운전 벌칙 수준 향상

현행	개정
0.03~0.05% 징역 6개월 이하, 벌금 300만원 이하	0.03~0.08%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
0.05~0.1% 징역 6개월~1년 벌금 300~500만원	0.08~0.2% 징역 1~2년 벌금 500~1000만원
0.2% 이상 징역 1~3년, 벌금 500만~1000만원	0.2% 이상 징역 2년~5년, 벌금 1000만~2000만원
2회 징역 1~3년, 벌금 500만~1000만원	2회 이상 징역 2~5년, 벌금 1000만~2000만원
3회 징역 1~3년, 벌금 500만~1000만원	2회 이상 징역 2~5년, 벌금 1000만~2000만원
추정불응 징역 1~3년, 벌금 500만~1000만원	징역 1~5년, 벌금 500만~2000만원 음주단속 불응, 음주횡수에 포함



음주운전 행정처분 강화

면허취소 횟수 3회(0.05%)	면허취소 기준 0.1%이상	면허정지 기준 0.05%이상
2회(0.03%)	0.08%이상	0.03%이상

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정 기간 강화

음주운전 교통사고	3회 이상 3년, 2회 2년 → 2회 이상 3년 1회 1년 → 1회 2년
음주운전 음주차사	3회 이상 2년, 2회 1년 → 2회 이상 2년 신설 5년

착한운전자미리지도 제도 개선

음주운전, 교통사망사고, 난폭·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 착한운전자 미리지도 특혜점수 사용 제한

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조정

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
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.12% 초과 → 0.1% 초과

자료: 경찰청

경찰,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 제정

1 사건처리기준 제정

기준	개정
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개정 -위험운전치사상	상해 10년 이하,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사망 1년 이상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,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사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
도로교통법 개정 -음주운전	단속기준 0.05% 음주전력 3회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,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단속기준 0.03% 음주전력 2회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,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기타 음주수치별 형량 상향
현행법 1회 음주전력자가 재차 0.05%의 음주운전 한 경우 법정형이 6월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	개정법 같은 사례의 경우 2년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



- 음주교통사고 •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
• 0.08% 이상 주취상태에서 사망, 중상해 등 중한 사고 및 상습범인 경우 구속
- 재범 이상 전력자 •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,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
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 유형 적용
• 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인자로 반영, 구형 강화
• 동종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범행, 가중인자로 반영
- 음주 도주 사범 • 도주 사망사고,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,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 구속수사
- 구속 기준 강화 •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
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 청구
- 어린이 보호 • 승객 및 어린이에 대한 보호의무,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
- 구형의 균형 담보 • '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이동', '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 있는 경우',
'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' 등 다양한 사례를 감경요소로 반영

자료: 경찰



지난달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간 훈방됐던 사례들도 대부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.

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~2019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~0.09%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는 8248건에 달한다.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

년, 벌금 500만~1000만원 ▲0.2% 이상 징역 2~5년, 벌금 1000만~2000만원이다.

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~5년·벌금 1000만~2000만원,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~5년·벌금 500만~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.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적발 횟수는 3회에서 2

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등에는 피해가 경미해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된다.

5년 내 음주전력이 1회만 있어도 구형이 강화되며,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구속 시도가 이뤄진다. 승객 및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한 약자 보호 부분도 반영된다.

불론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, 응급환자 이송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, 피해자가 동승한 가족인 경우 등은 일부 감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가벼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.

경찰은 이날부터 8월24일까지 개정법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.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~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전개되며 유흥가, 식당, 유휴지 등에서는 20~30분 단위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.

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단위의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정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.

아울러 경찰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전 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관사에서 오전 7~9시 출근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점검을 했다.

뉴스

최근 7개월 혈중알코올농도 0.03~0.05% 8248건

매달 1천여명 조금 넘어...현재는 '면허정지' 등

음주운전 수사 강화...피해 크거나 상습범 구속

5년 내 전력 1회 있어도 구형량 강화...특별단속

0.09%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였다.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,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지만 그동안 훈방으로 처리된 대부분의 경우에 속할 것으로 보인다. 즉, 저녁 식사 등 자리에서 가볍게 반주를 하고 '괜찮겠지' 하면서 운전대를 잡는 수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.

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건 처리 기준 강화 조치는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0.08%에서 0.03%로 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.

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▲0.03~0.08% 징역 1년 이하, 벌금 500만원 이하 ▲0.08~0.2% 징역 1~2

회로 강화됐다.

음주운전 피해가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이뤄질 수 있다. 이날부터 시행되는 경찰 교통범죄 사건 처리 기준은 교통사고의 유형을 일반과 음주로 구분해 수처에 따라 구형, 구속 기준을 상향했다.

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 주취 상태에서 사망, 중상해 등 중한 사고 또는 상습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진행된다.



호남신문

☎ 062)229-6000
팩스 062)222-5548



임산부 배려식,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?

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
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.
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.